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구성·운영업무 지도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1억 원 또는 2억 1천만 원 이상(국가간 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용역명, 주요 내용, 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입찰 예정 시기,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거나,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 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2015. 12. 3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심의⁶⁹⁾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69)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세부적으로는 「설계용역 평가기준(PQ SOQ TP) 매뉴얼」(2013. 3.) II.사업수행능력(PQ)평가 7.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운영 나.평가위원의 자격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로 구체화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변별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매뉴얼 III.기술자평가(SOQ), 5.기술자의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선정하되, 내부직원의 비율은 70%를 초과 할 수 없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1.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 구성 시 자격기준 미 준수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 3. 「설계용역 평가기준에 대한 매뉴얼」 II.(사업수행능력평가)-7.(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 운영) -나. 평가위원자격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의 경우“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로 제한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에 참여 하지 않도록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변별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2015부터 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남도과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용역 71건 중 18건은 박사학위 등이 없는 6급 공무원이 평가위원에 1명 이상 위촉된 사실이 있다.

〈표 1〉 2015년부터 6급 공무원(박사 또는 기술사 없음)이 평가위원 1명이상 위촉현황

소계	본청	창원	사천	창녕	고성	하동	남해	함양	합천	비고
18	5	1	2	1	1	4	1	2	1	

※ 자료근거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작성

또한, 6급 이상 공무원이 박사학위 등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선정 평가하여야 함에도, 지역 인재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평가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하는 등 위 18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가 없는 발주청 소속부서 직원들만 참여 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비교

구 분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구성 운영 (기준)	<p>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p> <p>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p>	<p>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p> <p>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p>
평가 위원 자격 (매뉴얼)	<p>1)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p> <p>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2급(부장)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p> <p>3) 해당 발주청(상급기관 포함)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p> <p>4)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p>	<p>없 음</p> <p>주의) 발주부서 직원들만으로 구성은 금지</p>

2. 건설기술용역(PQ 등)평가시 지방공기업 실적 등 미 인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의 계약담당자 주의 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와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등 총 27가지 유형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2016년 “○○마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 외 2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심의완료 후, 입찰 참여업체인 (주)○○건설관리공사로부터 “해당분야 경력기재사항에서 ○○지방공사, ○○교통공단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므로 감점 처리되어 이의신청”을 받았음에도

공고문에 광역시도와 공공기관 등 정부투자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동 기간 동안 경상남도와 시·군에서는 36건*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광역시도와 공공기관 등 정부투자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2015년부터 지방공기업, 민간 등 실적 미인정 현황

소계	본청	창원	사천	밀양	창녕	하동	함양	합천	비고
36	18	4	4	3	3	1	2	1	

※ 자료근거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작성

동 기간 동안 경상남도외 시·군에서는 37건*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광역 시도와 공공기관 등 정부투자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건설기술용역사업(PQ) 이의신청에 대한 미 심사 등

경상남도에서 제정 공고한(경상남도 공고 제2015-000호, 제2016-000호) 「경상남도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하수도, 방재, 항만·어항, 공원·조경레저, 폐기물, 환경, 블록구축 및 우수율 제고)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에 V. 일반사항-5.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기준 일반사항-10.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입찰 참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으로 부터 “기술지원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평가 산정시 공고내용상 정확한 기준명시가 없어 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중복·허위·오류 기재로 감점” 처리되었다고 이의신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고,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분명”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방침 만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주)○○엔지니어링에서는 공고 당시 기술지원기술자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밀양시에 문의한 결과, 구두 답변으로 “공고된 평가기준에만 따르라”하는 등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점 평가한 사항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이, 경상남도 ○○○○과에서는 시·군 등 각 발주청의 업무 지도 강화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함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보완 또는 매뉴얼 작성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향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보완 등을 하여 주시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업무에 철저한 주의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장, 사천시장, 밀양시장, 창녕군수, 고성군수, 하동군수, 남해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선정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가 있는 6급 공무원으

로 선정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공기업 등 실적을 미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